

작품 내용

제 목	사용해도 될까요?
내 용	국내 최초의 동물교감교육 교재 『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Reading to a Dog』 초고를 마무리한 뒤였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프로그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찾는 일이었다. 내가 소개하려던 것은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관이 오랫동안 이어 온 교육 현장이었다. 그 현장을 담은 사진이 필요해서 교재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호주의 한 동물교감교육 기관 홈페이지에는 휠체어에 앉은 여학생이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리트리버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진이 있었다. 아이의 책 읽기를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주는 리트리버의 모습에는 학교와 가정에서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반려견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며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Children Reading to Dogs(리딩독 프로그램)’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기관의 활동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꼭 신고 싶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이메일과 두 번째 이메일에는 답이 없었다. 스팸메일로 분류되었을까 걱정하며 보낸 세 번째 이메일에 며칠 뒤 답장이 도착했다. 그러나 기대하던 사용 승인은 아니었다. 홈페이지의 사진은 기관이 독자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저작권 관리기관을 통해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그 이메일 한 통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그 기관의 소유는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과, 그 자료를 복사해 내 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돌아보면 저작권에 대한 나의 이해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해왔다. 1980년대 대학 시절에는 도서관에서 선행 논문을 찾아 인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구 방식이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한 박사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준비하던 2020년대에는 카피킬러 같은 유사도 검사와 표절률 검증이 논문 심사의 필수 절차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연구 윤리를 배우며 저작권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함께 경험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저작권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배운 것은 논문이 아니라 대학 교재를 집필하면서였다. 우리 연구팀 역시 리딩독(Reading Dog)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호자와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당시 참가자의 대부분은 장애아동과 특수학급 아동이었다. 촬영 동의를 받았더라도 참가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의 변화가 가려진 사진으로는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모습과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웠다. 출판사는 해외 이미지 전문업체와 계약되어 있어 일부 사진은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찾던 것은 동물교감교육이 이루어

지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었다. 결국 동물교감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운영이 활발한 미국,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련 기관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절반의 기관에서는 답을 받지 못했다. 어떤 기관은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어 허락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어떤 기관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기대를 품고 기다렸던 사진들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이 아쉬웠다. 그중에서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유기견 보호소 견사 앞 방석 위에 나란히 앉아 유리창 너머의 유기견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는 모습’

아이와 유기견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기관의 활동을 소개하는 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식 허락을 받지 못해 포기했다.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창작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었다.

교재 본문의 설명에 적합한 사진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고 답신을 기다리던 어느 새벽녘이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에서 이메일 도착 알림이 울렸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설렘에 벌떡 일어나 메일함을 열었다. 미국의 한 기관 대표가 크리스마스 휴가 중 직접 보내온 답신이었다.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며 잠이 싹 달아났다.

“저는 휴가 중이지만 귀하의 사정이 급해 보여 담당자가 먼저 도와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몇 번이고 메일을 다시 읽었다. 한국의 이름 없는 연구자를 위해 휴가 중에도 손을 내밀어 준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다.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기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다.

며칠 뒤 정식 절차를 거쳐 사진작가의 동의를 받은 원본 사진들이 도착했다.

‘저작권자를 함께 표기해 달라’는 정중한 부탁도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마다 출처와 저작권자를 정확히 표시해 교재에 실었다. 그 사진들은 교재를 완성해 준 또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 경험 이후 국내 자료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다. 2025년 겨울 『동물복지와 법규』 교재를 집필할 때는 서울대공원의 동물 사진, 농촌진흥청의 농장 동물 사진, 그리고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과 톰 레건(Tom Regan)의 『동물권 옹호』 책 표지 이미지까지 모두 정식 승인을 받아 실었다.

내 돈으로 구입한 책이라 할지라도 교재에 표지 이미지를 실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책의 소유와 표지 이미지의 이용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와 공원 관계자, 담당 사진가를 차례로 거쳐 사용 목적과 교재 페이지를 확인한 뒤 원본 사진을 제공해 주었고, 농촌진흥청 역시 정해진 신청 절차를 거쳐 필요한 사진을 전달해 주었다.

그 과정을 거치며 나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라도 당연히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배웠다. 사진 한 장, 자료 하나에도 담당자의 확인과 승인 절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담겨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저작권을 확인하는 일은 자료를 포기하는 과정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고, 때로는 더 좋은 원본을 제공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타인의 창작물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해외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니 변화는 더욱 뚜렷했다.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된 사진과 로고, 연구 자료들의 이용 조건도 훨씬 명확해져 있었다.

지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의 사용 제한이 처음에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누군가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결실이라면, 단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가져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먼저 권리자를 찾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며,
겸손하게 허락을 기다리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세 권의 대학 교재를 집필하는 동안 그것은 창작자를 향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자료를 만나면 나는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창작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사용해도 될까요?”

그 짧은 질문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이면서,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으로 탄생한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겠다는 나의 다짐이다.